
인증·지정


직접지원


간접지원


준수사항

www.moel.go.kr

알아두면 유익한 사회적기업 제도 안내서



고용노동부


목 차 CONTENTS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03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11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29

이런 행위는 안돼요 4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①저소득자(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②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 ④성매매 피해자 ⑤장기실업자(1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 사회적기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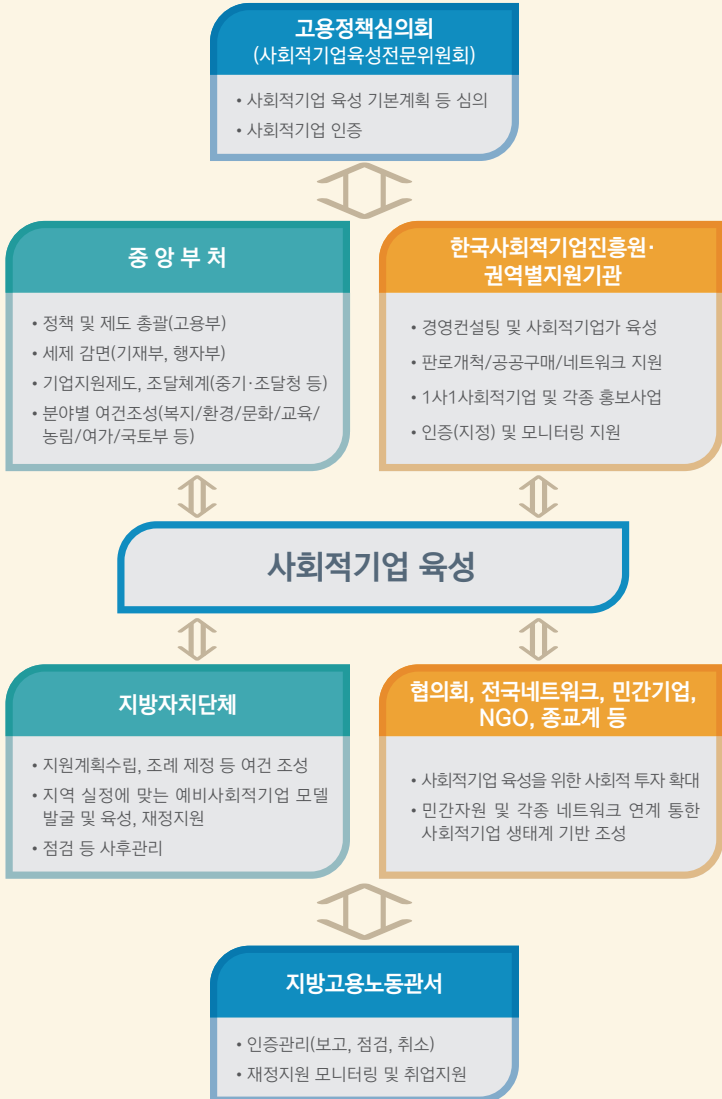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3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 인증 및 지정요건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 이상)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3개월 이상)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인증·지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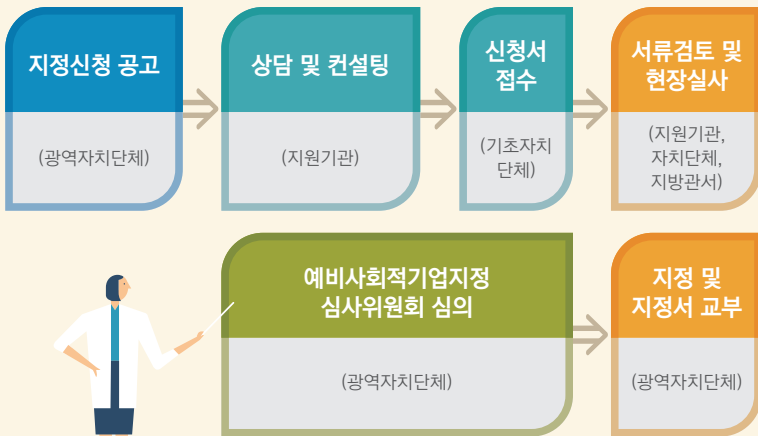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일자리 제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주된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기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

● 인증 및 지정절차

- 인증



-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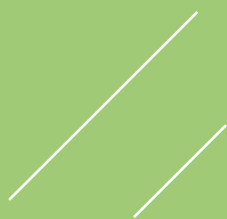


*부처형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위 절차에 따라 지정

● 인증·지정 취소 및 제한기간

구분	인 증	지 정
취소 요건	○근거: 법 제18조제1항(인증의 취소)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 ○예비사회적기업지정지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운영되지 않는 기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4. 기타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 및 지정 제한 요건	○근거: 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예비사회적기업지정지침
	1.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다.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라. 고용부장관이 사업목적, 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1. 지정만료·취소·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다.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라.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소 등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2.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3.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1년간 지정신청 제한
제한 기간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만료, 취소, 반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직접지원 내용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사회보험료지원

1

직접지원 내용



● 사업 및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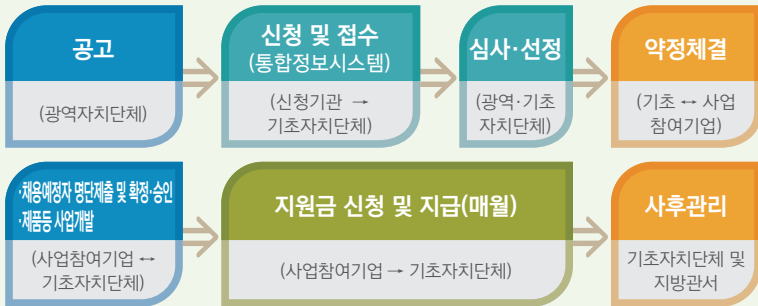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일자리 창출사업	일반인력 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최대 50인 한도, 5년간 지원 (예비2년, 인증3년) ○ 지원수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4대 사회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 (계속고용)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
	전문인력 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한도: 월 200만원~250만원(통상임금기준) ○ 최대 5년간 지원(예비2년, 인증3년) ○ 지원인원: 전문인력 3명(예비 1명) ○ 지원수준: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1년차 20% → 2년차 30% - 인증 1년차 20% → 2년차 30% → 3년차 50%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R&D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연간 1억원(예비 5천만원) 최대 3억원 ○ 5년간 지원(예비2년, 인증3년) * 지원회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이상 30% 	○	○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최대 50인 한도, 인증기업만 해당 ○ 지원기간: 4년, 월117,580원('16) 	-	○

●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

구 분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지원 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p>-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16.6.1./ 전문인력 '16.8.1/ 사업개발비 '16.10.1 → 최초 지원개시일은 '16.6.1임</p> <p>- '16년 전에 지원받은 사업은 기존 사업별 최대지원기간 적용</p>		

● 참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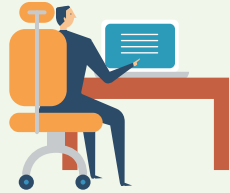


* 다만, 사회보험료는 약정체결 절차없이 사회적기업의 신청에 따라 확인 후 지급

- 지원금 지급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으로(www.seis.or.kr) 하시면 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일자리창출지원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참여제외 대상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다만,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0%)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개시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 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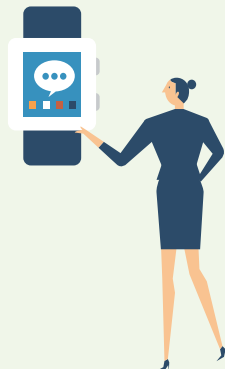
참여제한자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사업참여기업에서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 ②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 중인 자
 - ③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 ④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대학원생 포함)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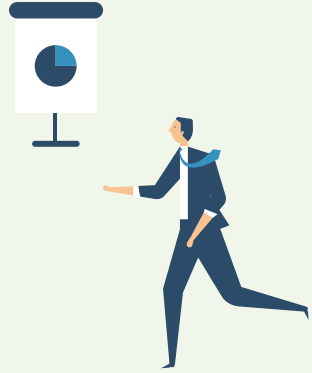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기간: 12개월(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약정)
 - * 재심사 신청은 지원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안내
- 최대지원기간: 5년
- 지급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36%)
- 지급수준: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 차등
 - 예비: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3

전문인력지원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참여제외 대상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개시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 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참여제한자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사업참여기업에서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하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사용한 경우, 본 지침의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속지원 가능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대학원생 포함)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지원분야 및 자격

● 지원분야

- ① 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 ②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 ③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 ④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 ⑤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 ⑥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 ⑦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 ⑧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 자격요건

지원 수준	200만원	250만원
경력 요건	<p>①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 개발, 법률,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 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p> <p>②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 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p> <p>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 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p>	<p>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p> <p>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p> <p>다.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 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p> <p>라. 위 '가~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p> <p>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p> <p>바.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인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p>
자격 요건	<p>○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p>	<p>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p> <p>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p>
학력 요건	<p>○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p>	<p>○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p>

지원내용

- 지원기간: 12개월(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약정)
 - * 재심사 신청은 지원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가능
- 최대지원기간: 5년
- 지원인원: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3명), 예비 사회적기업은 1명
 - 다만,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예비사회적기업 15명이상)
- 지원한도: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 지급수준: 참여연차별로 '자부담' 차등
 - 예비: (1년차) 20% → (2년차) 30%
 - 인증: (1년차) 20% → (2년차) 30% → (3년차) 50%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참여제외 대상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지원내용

- 연간 지원한도: 예비 5천만원, 인증 1억원
 - 최대지원금액: 3억원
 - 최대 지원기간: 5년
 - 지원수준: 참여회차별로 '자부담' 차등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 30%

5

사회보험료지원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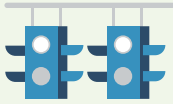
*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참여제외 대상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예: 두루누리사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지원내용

- 지원기간: 4년
- 지원한도: 50명
- 지원수준: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17,58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1,340원($\approx 6,030\text{원} \times 209\text{시간} \times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8,820원($\approx 6,030\text{원} \times 209\text{시간} \times 0.7\%$)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40,710원($\approx 6,030\text{원} \times 209\text{시간} \times 3.26\%$)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56,710원($\approx 6,030\text{원} \times 209\text{시간} \times 4.5\%$)

*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background is a solid teal color. It features several white diagonal lines of varying lengths and orientations. One pair of lines is in the upper left quadrant, another pair is in the lower left quadrant, and a single long line is on the right side. The top-left corner of the teal area is cut off by a white diagonal line.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간접지원

경영지원

공공구매

시설비 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공간 설치

세제지원

1

간접지원



● 사업 및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777개소 ('15년 실적 대상)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일반대부(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대부(사회적기업 전용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미소금융, 나눔보증)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
	○ 내국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



경영컨설팅

- (예비)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서 자립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컨설팅

구 분	기초컨설팅	
	경영코칭	멘토형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단계	초기단계	초기단계/성장단계
주요내용	인사·회계·법무 분야 등의 경영코칭 (Coaching)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본 시스템 구축 지원	선배 사회적기업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후발 사회적기업의 목표관리 및 전략 개발 등 경영 전반 문제 해결 지원
지원한도	- 연간 1회, 최대 330만원 이내(총 3회 한도)	
기업부담	- 최대 10% 이내	
수행기관	- 기초컨설팅 지원기관 내 통합 경영지원단	
수행절차	신청기업 접수(지원기관) → 사전코칭(통합경영지원단) → 실시계획서 검토 및 승인(진흥원) → 집중코칭(컨설턴트 또는 멘토) → 모니터링(지원기관) → 사후 코칭(컨설턴트 또는 멘토) → 컨설팅 결과 평가(진흥원)	

-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031-697-7831 ~7838)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컨설팅

구분	전문컨설팅		
	특화형	지속성장형	공동형
대상	사회적기업		
단계	성장단계	성장단계/자립단계	자립단계
주요내용	특정 분야/주제의 경영 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	경영·기술 전문분야의 경영 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기업들이 공동의 경영 현안 문제 해결
지원한도	- 총 5회, 5,000만원 이내(연도별 신청한도는 최초 1회 지원만 1,800만원, 2회 이상은 총 지원한도내 지원)		
기업부담	- 지원횟수에 따라 기업 부담 비율 상향(총 컨설팅 금액 대비 10%~40%)		
수행기관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수행절차	컨설팅기관 등록(진흥원) → 신청기업 접수(진흥원) → 대면평가(진흥원) → 컨설팅 대상 선정(평가위원회) → 컨설팅 실시(컨설턴트) →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평가(진흥원)		

-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031-697-7831 ~7838)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토록 함

주요내용

-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 (우선구매 범위)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 (구매실적 등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공고

- (구매실적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우선구매 실적 반영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기재부)

* 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포함)

* 지방공기업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포함)

4

시설비 등 지원



정책자금 지원

-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

주요내용

구분	미소금융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	사회적기업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수행주체	미소금융중앙재단 선정 사회적기업 분야 복지사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대출: 국민, 신한, 우리, 기업은행 등)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및 서울시·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한도	1억원	매출액의 150%이 내, 최대 45억원 (수도권 제외 지방 소재기업 50억원)	4억원	1억원
대출금리	3%~4%	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영리 4.6% 비영리 3.6%	대출은행별 설정
비고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영리 90%, 비영리 100% (보증료율 및 기간) 연 0.5%, 5년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및 기간) 연 0.5%, 5년 이내

* 대출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과평가팀(031-697-7771 ~7774)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공간 설치



설치근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650호) 제34조의 6제1항 및 제2항

* 제34조의6(사회적기업)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의료·보육·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사회적기업등에 제공하며, 수요가 없는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다.

면적기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6제3항

③ 사회적기업 등의 입주공간 총면적은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 : 35제곱미터 이상
2. 500세대 이상 1,000 세대 미만 : 70제곱미터 이상
3. 1,000세대 이상 : 100제곱미터 이상



주요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이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위한 공간

신청절차

- LH 홈페이지 공고, 사회적기업의 신청 및 LH심사·결정
-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055-922-5506 ~5507)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6

세제지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6.12.31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4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 부터 적용)와 그 후 2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인증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 감면 +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감면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취·등록세, 재산세)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의 25%를 감면 ('18.12.31 까지)

- (개인지방소득세) '16.12.31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14년 도입)

* 인증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 감면 + 그 후 2년간 50% 감면

기부금 인정

-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시행령 제36조제1항2호 다목,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제2항
- 내국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기부금의 손금산입으로 소득공제 혜택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 촉진

부가세 감면

-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5호·6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제36조 제1항 제4호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image features a solid blue background with a white diagonal cut-off at the top-left corner. Several thin, white diagonal lines are scattered across the blue area, some parallel to the cut-off and others at different angles, creating a modern, minimalist aesthetic.

이런 행위는 안돼요

이것만은 꼭!
부정행위란?
어떤 경우 약정해지?
부정행위시 불이익은?

1

이것만은 꼭!

📅 최근에 일부 사회적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선량한 사회적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 사회적기업은 이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는 도중 근로자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지원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 ✓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 ✓ 사업참여기업 선정 신청서(재심사 포함) 및 관련서류 허위작성

3

어떤 경우 약정해지?



-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지원, 사회보험료지원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 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 지원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 ✓ 기초자치단체장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지원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자체 고용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 ✓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 ✓ 매출액을 일자리창출지침에 의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배정인원의 50% 이상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이 경우 1년차 지원을 받은 것으로 봄)
- ✓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 ✓ 목적외 사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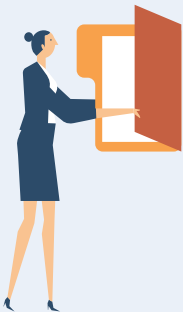
-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 ✓ 기타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사유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즉시 약정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



4

부정행위시 불이익은?

- ✓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 형사고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명단공개



알아두면 유익한
사회적기업 제도
안내서



고용노동부